

고통의 역사 딛고 제주에 진정한 봄이 온다

4·3특별법 개정안 26일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 예정 가결시 4·3 발발 73주년만에 희생자 피해구제 길 열려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4·3 73주년만에 위자료라는 형식 이기는 하지만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개정안이 처리되면 4·3 73년 역사에서 1999년 특별법 제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이후 4·3 해결의 가장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날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정된 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를 통과, 법사위로 넘겨져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다.

개정안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 하도록 했다(제16조). 이와 관련 제 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 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반영했다.

수형인의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 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제14조 및 제15 조).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 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 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 원을 추가하며, 이들이 추가 진상조 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구 성되는 분과위원회에 위원이 포함되 도록 했다.(제5조)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 도록 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 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22 조 및 제23조).

이날 법안 의결에 앞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막대한 비용 과 지역 형평성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진상규

명과 명예회복만 하면 되지 꼭 돈으 로 보상해야 하느냐"며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 진상조사 하고 명예회복 해주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정부가 그간에 국민을 위로하고 상 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 면 지금과서 특별법이 얘기될 필요 없다"며 "그 오랜 세월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은 분들이다. 특별라고 보 는 것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 개정 이후엔 후속 조치와 관련 한 정부의 성실한 자세가 요구된다. 위자료 지원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유 족회의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도출하 고, 이에 따른 보상법 제정 또는 특별 법 재개정, 내년도 예산안 반영 등에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기까지 4·3 유족회와 제주도의회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왔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시·도회의장협의회 등은 공동건의문·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전국에서 힘을 모았다.

26일 본회의에는 제주지역구 송재 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참여 하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 주4·3유족회 등이 국회를 찾아 결과 를 지켜볼 예정이다. 국회·부미환기자



철통 경로 속 백신 수송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수송이 시작된 25일 보건 당국 관계자들이 철통같은 경로 속에 제주항 4부두를 통해 제 주보건소에 도착한 수송차량에서 백신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상국기자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제주 구현 '성큼'

도, 인권영향평가제도 전면 시행 앞서 시범운영 법령·정책 등 수립 전 인권영향 사전 분석·평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 제주 를 구현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도 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제도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법령, 정책 등을 수립하 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인 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 평가해 정책 등이 인권 증진에 긍정 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이다.

제주인권영향평가제도(이하 평가 제도)는 2021년 사전준비, 2022년 시범운영, 2023년 전면 시행 등 3개 년에 걸쳐 추진된다.

제주도는 올해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사례분석 및 표준평가지표 개

발(제주연구원 추진)과 자치법규(조 례·시행규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자치법규 전수조사는 사후 인권영 향평가로서 조례·시행규칙에 포함된 인권 침해·차별적 표현과 도민의 권 리를 제한하는 요소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연구기초자료 활용뿐 만 아니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후 일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다.

전수조사의 평가지표는 3개 주제· 7개 항목으로 ▷용어와 표현(2) ▷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3) ▷도민 참여 보장(2) 등이다.

이어 2022년에는 도 특별자치행정 국 소관 조례(69)와 조례시행규칙

(13)을 대상으로 사전인권영향평가 를 시범 운영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평가제도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3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소 관 자치법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자치법규 의 정책이나 공공건축물 등에 평가 제도 도입 방침도 결정하게 된다.

송중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 한 인권의 가치회복과 인권의식 확 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관련 인권영향평가제도는 현재 인 권전담조직(담당관 또는 인권센터) 이 갖춰진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 도입해 추진 중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올들어 4·3 희생자 43명·유족 8545명 추가신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접수 한 결과, 이달 21일 현재까지 희생자 43명, 유족 8545명이 신청 접수했다 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제주4·3사 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

접수를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 등 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 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4·3실무위원회 는 정부에 제7차 추가신고 접수기간 운영을 건의했으며, 정부가 유족들의 아픔 해소를 위해 적극 수용하며 제7

차 추가신고 접수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제7차 추가접수 신고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 월간이다.

신고 기간에 접수된 희생자와 유 족은 3월부터 읍면동에서 사실조사가 진행되며, 4월부터 제주4·3실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중앙위원 회에서 최종 심의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고대로기자

時間

문창배 초대전

2021.02.18(목) ~ 04.16(금)

관람시간 안내

평일	Open 11:00	주말	Open 11:00	· 휴관 : 매주 월요일
	Close 18:00	(±,日)	Close 17:00	· 문의 : 064-750-2543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Gallery **IBD**

토·일·월요일 신문 쉽니다